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의안 번호	3555
----------	------

제안년월일 : 2026년 3월 6일
제안자 : 교통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 김성준 의원 외 18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989호), 성흠제 의원 외 15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250호), 서울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제3차 회의 (2026.3.5.)에서 일괄 심사한 결과,

2건의 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2건의 개정조례안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출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사유

- 김성준 의원 외 18명 및 성흠제 의원 외 15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마을버스 기준운송원가를 법령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재정

지원 업체 선정기준과 재정지원 기준액을 매년 4월까지 정해 예산을 편성하며, 마을버스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는 한편 시장이 사업자의 서비스 개선 계획을 평가하고, 환경친화적 마을버스 보급에 대한 노력과 행정지원 절차를 추진하며, 사업자는 비상상황 시 운수종사사의 대응매뉴얼 마련과 정기적 교육을 실시하도록 관련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합 및 수정·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출함

3. 대안의 주요골자

- 가. 마을버스 기준운송원가 산정시 관련 법령을 고려하도록 함(안 제3조제3항)
- 나. 마을버스 재정지원 기준액을 매년 4월까지 정하고 예산을 편성하도록 함(안 제3조제4항)
- 다. 시장은 사업자의 서비스 개선 계획을 함께 평가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제4항 신설)
- 라. 시장은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마을버스 보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행정 지원절차를 추진하도록 함(안 제10조제10항 신설)
- 마. 마을버스 관련 위원회의 구체적인 기능과 회의소집 요건을 신설함(안 제13조제1항, 제2항)
- 바. 사업자는 차량 고장이나 비상상황 발생 시 승객의 안전 확보 및 대피조치를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7조제6항 신설)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기준운송원가의 산정시”를 “기준운송원가의 산정시 관련 법령을 고려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초에 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를 “4월까지 정하고, 예산을 편성하여”로 한다.

제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시장은 사업자의 서비스 개선 계획을 함께 평가하여야 한다.

제10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⑩ 시장은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마을버스 보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행정 지원절차를 추진한다.

제13조의 제목 “(운영)”을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마을버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마을버스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마을버스 노선 및 요금조정에 관한 사항
3. 보조금 등의 마을버스 재정지원 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
4. 마을버스 운영체계의 조정·개선에 관한 사항
5. 시민 만족도, 인센티브 평가제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마을버스 정책수립 및 집행과 관련되는 주요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7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사업자는 차량 고장이나 비상상황 발생 시 운수종사자가 신속히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하차 및 대피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매뉴얼을 마련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교통위원회 대안
<p>제3조(기준운송원가 산정 및 정산)</p> <p>① ~ ② (생략)</p> <p>③ <u>기준운송원가의 산정시</u> 마을버스 업계의 의견을 들은 후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심의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p> <p>④ 시장은 재정지원 대상업체의 선정기준 및 재정지원 기준액(재정지원 대상업체의 운송원가에서 이윤을 제외한 금액)을 매년 <u>초에 정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u> 운송수입금 등이 재정지원기준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에게 그 부족분을 지급할 수 있다.</p> <p>제4조(경영 및 서비스 평가)</p> <p>① ~ ③ (생략)</p> <p><u><신 설></u></p> <p>제10조(시장의 책무)</p> <p>① ~ ⑨ (생략)</p> <p><u><신 설></u></p>	<p>제3조(기준운송원가 산정 및 정산)</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u>기준운송원가의 산정시</u> 관련 법령을 <u>고려하고</u> ----- ----- ----- ----- -----</p> <p>④ ----- ----- ----- ----- 4월까지 <u>지 정하고, 예산을 편성하여</u> ---- ----- ----- -----.</p> <p>제4조(경영 및 서비스 평가)</p> <p>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u>시장은 사업자의 서비스 개선 계획을 함께 평가하여야 한다.</u></p> <p>제10조(시장의 책무)</p> <p>① ~ ⑨ (현행과 같음)</p> <p>⑩ <u>시장은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마을버스 보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행정 지원절차</u></p>

현행	교통위원회 대안
<p>제13조(운영) <u><신 설></u></p> <p><u><신 설></u></p> <p>① ~ ⑤ (생략)</p> <p>제17조(안전운행 방안) ① ~ ⑤ (생략)</p> <p><u><신 설></u></p>	<p>를 추진한다.</p> <p>제13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p> <p>① <u>마을버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마을버스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u> 2. <u>마을버스 노선 및 요금조정에 관한 사항</u> 3. <u>보조금 등의 마을버스 재정지원 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u> 4. <u>마을버스 운영체계의 조정·개선에 관한 사항</u> 5. <u>시민 만족도, 인센티브 평가제 등에 관한 사항</u> 6. <u>그 밖에 마을버스 정책수립 및 집행과 관련되는 주요사항</u> <p>② <u>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u></p> <p>③ ~ ⑦ (현행 제1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p> <p>제17조(안전운행 방안) ① ~ ⑤ (현행과 같음)</p> <p>⑥ <u>사업자는 차량 고장이나 비상상</u></p>

현행	교통위원회 대안
	<p><u>황 발생 시 운수종사자가 신속히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하차 및 대피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매뉴얼을 마련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u></p>